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16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전종덕 · 허성무 · 김선민
김종민 · 손 술 · 정혜경
임미애 · 한창민 · 용혜인
송옥주 · 윤종오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이 경우 지원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 ----- ----- ----- <u>. <후단 삭제></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